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제주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황정현

전화 064-729-4422 / 팩스 064-729-8359

보도자료 2023. 11. 17.(금)

### 제주시장, 서귀포시장 농지법위반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
- ✓ 사건관계인이 공적(公的) 인물인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,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,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(제12조 제1항 제2호)
- 제주지검 형사제3부(부장검사 윤원일)는 제주시장, 서귀포시장의 인사청문 회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고발된 농지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
  -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'농업인'이라고 허위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제주시장과 공동매수인인 변호사 3명을 각 불구속 구공판하고
  - 자녀가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,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에 농업인이 아닌 자녀를 '농업인'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<u>서귀포</u> <u>시장을 약식기소</u>하였음
- 제주시장과 지인인 변호사들은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철회된 농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, 유치권 분쟁이 계속 중임에도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위 농지를 낙찰받았고,
  - **서귀포시장**은 자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
- 제주지검은 피고인들에게 **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**을 기하고,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·관리를 위한 **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**할 것임

# 1

## 피고인(피의자) 및 범죄사실의 요지

순번	피고인[피의자]	범죄사실 요지	처분
1	<b>강병삼</b> (49세, 제주시장)	공모하여, '19. 11. 21.경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(합계 6,997㎡)를 취득하면서, 농업인이 아님에도 '농업인'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 [농지법위반]	불구속 구공판
2	A○○ (49세, 변호사)		
3	B○○ (45세, 변호사)		
4	C○○ (40세, 변호사)		
5	<b>이종우</b> (65세, 서귀포시장)	공모하여, '18. 12. 12.경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소재 농지 2필지(합계 962m²)를 취득하는 과정에서,	약식기소
6	이○○ (35세, 이종우의 딸)	이○○이 '농업인'이라고 허위 기재 후 신청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 [농지법위반]	기소유예

# Ⅱ 주요 수사 경과

O '22. 8. 25. 각 고발장 접수(고발인 :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)

O '22. 11. 10. 제주경찰청, 각 송치

O '22. 12. ~ '23. 6. 제주지검, 각 보완수사요구 및 보완수사결과통보 접수

O '23. 7. ~ 11. 제주지검, 직접 보완수사

# Ш

#### 수사 결과

#### ① 제주시장 및 변호사 3명의 공동범행 부분

- 제주시장과 B○○은 취득 당시 모두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고,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농업인이 아님 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'농업인'으로 기재하였음
  - ※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,000㎡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

- 제주시장은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'16. 5.경 제주시 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농지를 재차 취득
- 또한, 농지법에 의하면 '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**일부를** 위탁하는 경우'에 한하여 자경이 아닌 '위탁경영'을 할 수 있으나, 피고인들은 농지 대부분을 '위탁경영'하였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'농업경영 노동력 확보방안' 란에 '자기노동력, 일부고용'이라고 기재하였음
- 위 농지는 '16. 5.경 건축허가·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개시된 토지로서,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, 유치권 분쟁도 계속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위 농지를 낙찰받은 것임
  - 또한 당시의 농지 현황, 취득 자금의 출처 및 피고인들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자경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

#### ② 서귀포시장 및 이○○의 공동범행 부분

- 서귀포시장은 이○○를 대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, 이○○는 다른 직업이 있어 농업인이 아님에도 '농업인'으로 기재하고 이○○가 본인(서귀포시장) 소유의 다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기재하였음
- 검찰은 이 사건 농지 취득의 목적,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과정, 자녀인 이○○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서귀포시장은 약식기소, 이○○는 기소유예하였음

# Ⅳ 향후 계획

○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,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음.